

조시현

보낸 사람: "WooSung Han"

받는 사람: "한원상" <hanws@ytn.co.kr>

보낸 날짜: 2001년 7월 27일 금요일 오전 9:18

제목: 한국정부 공식입장 (Confidential)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이 LA소송팀에 접수된 후 지금까지 한국, 미국, 일본에 계신 국제법학자 세분(김창록, 박배근, 홍성필 교수)께서 견해를 밝혀주셨습니다.

세 분의 결론은 한 마디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의 견해 역시 비슷합니다. 다만, 대표변호사 가운데 한 명인 배리 피셔 국제인권변호사협회 수석부회장으로부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한국정부가) 조금만 수정해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피셔 변호사는 8월 1일 벌어지는 '위안부' 소송 예비심리를 앞두고 전략회의를 위해 마이클 하우스펠드 변호사와 만나기 위해 26일 LA를 떠나 워싱턴DC로 갔습니다.

LA소송팀은 현재 워싱턴을 방문중인 피셔 변호사와 장태한 교수, 영국을 방문중인 한태호 변호사 등 여러 분이 이번 주말 돌아오시는대로 한국정부 공식입장 공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입니다만, 결국 주미대사관이나 외교부에 수정본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들고 있는 답변서를 받아내는 데만 해도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한명숙 장관이나 김원웅 의원을 비롯해 여러 분들이 힘을 보태주셨는데도 그랬습니다. 자부심 많은 한국 외교부가 과연 수정 요청을 받아들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세 분 교수님들이 보내주신 견해를 원문 그대로 paste합니다. 한우성 드림.

----- Original Message -----

From: "hong seongphil" <sphong@mm.ewha.ac.kr>

To: "WooSung Han" <wshan@koreatimes.com>

Sent: Wednesday, July 25, 2001 6:12 PM

Subject: Re: 한국정부 공식입장 (Confidential)

홍성필입니다.

저 역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한국정부의 입장은 좋게 해석하면

- 1)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행사 여지가 법률적으로 남아 있는 것인가는 no comment
- 2) 어쨌든 외교적 청구는 하지 않겠다.
- 3) 개인들의 청구권행사는 여지가 남아있다.

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개인들의 청구권이 유효하다면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도 유효한 것인데- 대상 권리가 단지 과거의 침해사실에 대해서만 인지, 아니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피해에 대한 새로운 권리인지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한국정부의 입장은 논리적으로 모호하여, 오용의 여지가 큼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의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것이 보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개인의 권리에 대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굳이 국가-그것도 한국정부-의 생각에 의지하여 청구를 제기하여야만 하는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홍성필 드림

-----박배근 교수님 견해-----

모든 text가 그렇듯이 이번의 정부 답변서 역시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 타당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석 1:

정부 답변서 중의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실체적 권리는 소멸되었습니다."라는 말은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소송 등을 제기할 권리까지는 소멸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정부 답변서도 2항에서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라고 언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하여 자세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취하기 쉬운 또 다른 해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1-08-01

해석 2: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실체적 권리는 소멸되었습니다."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의견이라면 징용이나 또는 위안부 문제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대국민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 1975년 7월부터 1977년 6월간 국내적으로 보상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 더욱 더 이러한 결론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라는 한국 정부의 견해는 위의 결론과는 상충되는 것이지만, 이는 한국 정부의 관심이 진상규명과 사죄, 반성에 있으며 개인의 제소를 정부가 법적으로 금지한다든지 조력한다든지 하지는 않는다는 의사의 표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몇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더 있겠지만 그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주미대사를 통하여 접수된 정부 견해는 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제1항의 문언은 이 견해가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 관할권과 관련하여 대단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법원이 위 제1의 해석이나 그에 가까운 해석을 취하여 주면 다행이겠지만 제2의 해석이나 그에 가까운 해석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더 크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위험성을 내포한 문서는 소송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더운 여름, 내내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001. 7. 24

박배근

-----김창록 교수님 견해-----

1. 전화 연락이 여의치 않아 메일을 보냅니다. 가르쳐 주신 두개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보았습시다만, 연결이 잘 되지 않는군요.

2. 예상했던 대로 한국정부의 답신은 애매합니다. 지난번 김원웅 의원에게 온 답신과 대충 마찬가지로 애매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신을 저의 선배인 형법 교수에게 보여 주고 읽어 보라고 있더니, 그 첫번째 반응이 "가와 나는 서로 상충되잖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은 답신 자체의 애매성 때문입니다.

3. 다만 엄격하게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구권협정에 관한 양국 정부의 합의 사항에 따르면, 답신 가의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실체적 권리"는 협정 제2조 1항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정의이며, 따라서 답신 가에는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언급은 없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반론의 여지는 남게 됩니다. 바로 뒤이어서 "참고로 이 협정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는 이에 따른 대국민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 1975년 7월부터 1977년 6월간 국내적으로 보상 조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보상 조치" 속에는 성격상 '위안부'와 유사한 징용 피해자로서 사망한 사람들에게 대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측은 그것을 빌미 삼아 위 "보상 조치" 속에 '위안부'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는데 한국측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일본은 더이상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본측의 반론에 대해서는 '위안부'와 '징용'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근거로는 답신 나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부분을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위 3과 같이 주장을 전개하여 한국정부의 답신을 소송에 유리한 형태로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그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위 2에서 적은 저의 선배인 형법학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미국의 판사는 답신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위 3에서와 같은 주장을 전개할 경우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보다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5.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지난번 김원웅 의원에 대한 정부의 답신과 관련하여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보다 명확하게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답신을 받아 내는 것일 것입니다. 적어도 답신 가를 뺀 형태의 답신을 새로 받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01-08-01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차선은 역시 위 3에서와 같은 주장을 전개해 보는 수 밖에 없겠지요. 그에 관해서는 저의 의견서에 나오는 일본 정부의 입장등을 적극 내세워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